

법학사 취득학점인정제 시행지침

시행일 : 2019. 3. 1.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 내규(이하 “내규”라 한다) 제36조에서 정한 법학사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원칙)

본 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본 대학원 합격생 또는 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15학점 이내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학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3조 (학점인정시험의 실시)

- ①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학점인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② 학점인정시험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부터 최초 1학기가 종료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학점인정시험은 최종합격한 연도에 한하여 1회 응시할 수 있으며, 불합격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할 수 없다.

제4조 (학점인정시험 대상 교과목의 동일성 요건)

- ① 학점인정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강의내용과 본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내용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.
- ② 전항에 의한 동일성의 인정을 받아서 인정시험신청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의 인정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.
- ③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과 본 대학원이 개설한 교과목의 동일성여부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험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5조 (기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요건 등)

- ① A등급(A-포함) 또는 9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이수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이미 취득한 성적이 Pass 또는 Satisfactory 등인 교과목이거나 청강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시험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6조 (학점인정신청시험의 신청절차)

- ① 학점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 대학원에 제출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험응시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.
 1. 법학사 취득학점인정시험 응시원서
 2. 법학사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- ② 전항 제1호에 따른 법학사 취득학점인정시험 응시원서의 양식은 [별표 2]와 같다.

제7조 (학점인정시험합격자의 처리 등)

- ① 학점인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의 총점의 90%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② 학점인정시험에 합격한 교과목은 이수성적표에서 P(Pass)로 표기되며,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될 뿐 평점평균(G.P.A.)에는 반영되지 않는다.
- ③ 15학점 이내의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은 본 대학원 내규 제3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수업연한은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시험에 합격하여 인정받은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제8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인정시험대상교과목 인정기준

구 분	기 이수 교과목	본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인정학점 교과목
법학사 이수학점	헌법영역 교과목(헌법총론, 기본권론, 통치기구론, 헌법연습 등) 중 6학점이상 이수	헌법영역의 교과목 중 강의내용의 동일성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2학점 또는 3학점 이수인정시험 신청가능
	민법영역 교과목(민법총론, 채권총론, 채권각론, 물권법, 가족법, 민법연습 등) 중 6학점 또는 9학점이상 이수	민법영역의 교과목 중 강의내용의 동일성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3학점(6학점 기이수한 경우) 또는 4학점(9학점 기이수한 경우) 이수인정시험 신청가능
	형법영역 교과목(형법총론, 형법각론, 형법연습 등) 중 6학점 이상 이수	형법영역의 교과목 중 강의내용의 동일성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2학점 또는 3학점 이수인정시험 신청가능
	행정법영역 교과목(행정법총론, 행정법각론, 행정법연습 등) 중 6학점 이상 이수	행정법영역의 교과목 중 강의내용의 동일성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2학점 또는 3학점 이수인정시험 신청가능
	상법영역 교과목(상법총칙, 회사법, 어음수표법, 보험법, 해상법, 상법연습 등) 중 6학점 이수	상법영역의 교과목 중 강의내용의 동일성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2학점 또는 3학점 이수인정시험 신청가능
	기타 과목	법학사 과정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강의내용의 동일성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학점 또는 3학점 이수인정시험 신청가능

[별표2] 법학사 취득학점인정시험 응시원서

법학사 취득학점인정시험 응시원서

행정실장	부원장	원장

소 속	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		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
		연락처(휴대폰)		
		이 메 일	@	
출신대학(원)	출신학과(부/과정)			
학위등록번호				
응 시 교과목	학점인정대상교과목 학 점	기 이수 교과목		
		교과목명	이수연도 및 학기	학점
			년 학기	
학점인정시험 신청학점 계				

위와 같이 학점인정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